

[붙임1] 2026년 대구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(돌봄) 고도화를 위한 시범사업」예산가이드

1. 비목별 예산 사용 지침

비목명	사용처	주요내용 (유의사항)
홍보비	홍보에 필요한 현수막, 인쇄물 등 제작 시 지급	-제작한 물품은 시안 및 사진 제출 필수
소모성 물품 구입	사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 등 지급	-소모성 물품만 가능 -자산취득 성격의 물품(커피머신, 가구 등) 구입 불가
전문가 활용비	필요에 따른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	-강사료 및 원고료 세부기준 : <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사비 및 원고료 지급규정> 참조 -강사료(강의비+원고료) 125,000 원 초과 시 8.8% 원천 징수 기준 확인 필수 -원천징수금 : 월별 세무서 신고/납부 증빙서류 필수 (신청서,확인서,해당 사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확인서) -포럼의 경우, 발제비는 강사료 기준 준용, 토론비는 10만원
업무추진비	사업과 관련한 워크숍, 회의 등 개최 시 지급	-자부담 원칙 / 최소경비의 원칙 -식·다과비는 가급적 행사에 외부 전문가 참여 시 지급 (내부 실무자 회의 지원 불가) -식·다과비 기준 준수 * 식비 10,000원(1인 1식) * 회의록 첨부 필수 * 다과비 5,000원(1인) * 회의록 첨부 필수 -식·다과비 총액은 사업비 총액의 10% 이내 준수 (단, 외부 행사성 개최인 경우 예외) 예시) 사업비=100, 식·다과비 20만원 이내
교육식비 교육다과비	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식비, 다과비	-식·다과비 기준 준수, 프로그램 참여자 서명록 필수 (인원확인용) * 식비 9,000원(1인) * 다과비 3,000원(1인)
연구 조사비	자원조사 등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초 조사비용	-연구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(사업자등록증 확인)에서 견적서, 세금계산서 발행 후 지출 가능
조사 사례비	조사 참여에 따른 사례품 제공	-단가 10천원 이하 활용 가능
자문수당	교육훈련, 정책연구, 역량평가 등 관련 자문 수행	-최초 1시간 10만원, 초과 매시간 10만원 -자문내용 및 전문가 확인 서류 필요 -컨설팅일지 등 관련 양식 별도 안내 예정
보조 인건비	보조인력 인건비 (※ 컨소시움 내부 인력 지급 불가)	-보조인력 활용 가능 : 이력서,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, 보조인력 계약서,활동일지 (일시,시간,개인정보활용동의서,서명 등 포함) -보조인력인건비 편성단가에 식비, 교통비는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식비 교통비 별도 편성 불가 -보조인력인건비 : 시간당 10,320원 (일일 8시간 82,560원) -보조인력인건비 내부 구성원 지출 불가. -해당 비목은 단회성 보조인건비로서, 4대 보험 미가입이 원칙. (※ 4대보험 상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해당 비목이 필요할 시에는 담당자 사전 논의 필요)

※ 기타 필요한 비목에 대하여는 선정 후 협약 후 세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, 예산서 작성에 필요한 기준이 있다면 사전 문의바람

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

1 강사수당 지급기준

가. 일반강의 강사수당

(단위 : 1시간당 기본 / 초과, 만원)

구 분		대 상	지 급 액
특 별 강 사	1급	· 국내·외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	100이내 / -
	2급	· 전직 장관(급) · 전직 대학총장(급) · 전직 국회의원 ·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· 대기업 회장, 인간문화재 ·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	40 / 30
	3급	· 전직 차관(급) · 전직 공기업 대표 ·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·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	30 / 20
일 반 강 사	1급	· 전직 4급 이상 공무원(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) · 전직 지방의회의원 ·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,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·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, 중역 ·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의사, 기술사,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·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(박사학위 소지자) · 컨설턴트(대표 또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) ·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강사 ·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	25 / 12
	2급	·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·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 · 중소기업체 임원급 ·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 및 감정평가사 · 체육지도자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· 일반 컨설턴트,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·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· 원어·민 어학 강사(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,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) ·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	15 / 8
	3급	· 외국어, 전산 등 강사 ·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교과분야 5년 이상 강의 경력자 ·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	10 / 5
	4급	·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	8 / 4
	5급	·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	6 / 3

- 주) 1. 상기 기준으로 강사초빙이 어려운 경우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 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,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
 2. 세미나, 심포지엄,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
 3.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, 기타 특강, 일반강좌,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
 4. 강사 자격요건은 전직과 현직을 포함(단, 현직 공직자 등의 경우는 "나"항에 따름)
 5.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대면교육 강사수당과 동일하게 지급
 6. 일반강의 강사수당 적용대상 중 전문자격증 관련 인정 조건은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등급으로 인정

나. 공직자 등의 직무관련 강의수당(청탁금지법 적용)

(단위 : 1시간당 기본 / 초과, 만원)

구 분		대 상	지 급 액
특 별 강 사	2급	· 장관급*, 광역자치단체장* · 대학총장(장관급) · 국회의원*	40 / 30(20*)
	3급	· 차관급, 대학총장(차관급) · 기초자치단체장 · 공직유관단체장 · 언론사 대표	30 / 20
일 반 강 사	1급	· 4급이상 공무원 · 지방의회의원 · 대학의 교수 · 공직유관단체 임원 (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* 이상) · 언론인	25 / 12
	2급	· 5급이하 공무원 · 대학의 강사 등 · 공직유관단체 직원	15 / 8

- 주) 1. 상기 기준으로 강사초빙이 어려운 경우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외부강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,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
2. '공직자 등'이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 '청탁금지법)」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(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)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
3. '공직자 등의 강사수당'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모든 사례금을 포함함. 다만, 소속기관에서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에 따라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
4.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(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)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
5. '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' 이상 기준
가. 출연연구기관: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
※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기관은 적용 안 됨
나. 부연구위원: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,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·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
6.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대면교육 강사수당과 동일하게 지급

3. 기타 유의사항

※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는 범위

- ▶ 참여기관의 내부시설 사용료(임대료, 건물관리비 등), 사업 참여 인원의 인건비, 사업 참여 인원에게 집행하는 강사비, 자산취득비, 사업관리비 등 참여기관의 수익목적으로 공제하는 성격의 사업비는 편성 불가
-